2024년 04월 27일 18시 50분

감면내용

구분	국가유공자 감면	장애인 감면	다자녀 감면
대상자	- 국가유공자: 상이등급 1급 ~ 7급 - 5·18 민주화운동부상자: 신체장애등급 1급 ~ 14급 - 고엽제후유의증환자: 경도장애 이상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(장애 1급 ~ 3급), 시각 4급	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(※ 18세 미만: 재 연도가 2023년이라고 하면, 자녀가 2005년 현재일 이후의 출생자)
감면 대상 차량	- 승용자동차: 배기량 2,000cc 이하 이거나, 승차정원 7~10명 - 승합자동차: 승차정원 15명 이하 - 화물자동차: 최대적재량 1톤 이하 - 이륜자동차: 배기량 250cc 이하		- 승용자동차: 제한없음 - 승합자동차: 승차정원 15명 이하 - 화물자동차: 최대적재량 1톤 이하 - 이륜자동차: 배기량 250cc 이하
취득세 감면액	100% 감면	100% 감면 (단, 시각 4급은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되면 취득세의 85%만 감면됨)	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이면 100% 감면이고, 초과되면 취득세의 85%만 감면됨 (단, 승용자동차인 경우는 승차정원 7~10명 이외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의 140만원까지만 감면됨)
증명서류	국가유공자증, 고엽제후유증환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	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	가족관계증명서

추징요건

-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 분리시 감면된 세금전액을 추징함(예외 사망, 혼인, 해외이민, 운전면허취소, 폐차)

COPYRIGHT © MOKPO-SI. ALL RIGHT RESERVED.

MokPo - Si
Web Contents